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2. 30.(금) 2022. 12. 29.(목) 12:00	배포 일시	2022. 12. 29.(목)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장	민영신	(044-202-3051)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육성훈	(044-202-3061)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기존에는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

○ 지역구분도 ¹⁾대도시, ²⁾중소도시, ³⁾농어촌의 3종*에서 ¹⁾서울, ²⁾경기, ³⁾광역시·세종·창원, ⁴⁾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농어촌) 도의 "군"

현 행				변 경(23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 원	8,000만 원	7,700만 원	5,300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					

○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시명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국정 43)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 대상 단계적 확대 > 재산기준 현실화

** (지역구분) 지역을 4종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현실반영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반영 (공제액 상향) '18~'21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별 평균 전세가격 인상률 활용

□ 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구분	주요 내용								
재산범위 특례액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백만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 (1.04%) 적용,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구분	현행				변경('23년~)				
재산범위 특례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주거·교육급여	1억 원	7,300만 원	6,600만 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억4,300만 원	1억2,500만 원	1억2,000만 원	9,100만 원
	의료급여	8,500만 원	6,500만 원	6,000만 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주거·교육급여	1억2,000만 원	9,000만 원	5,200만 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억7,200만 원	1억5,100만 원	1억4,600만 원	1억1,200만 원
	의료급여	1억 원	6,800만 원	3,800만 원					

-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히고,
-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붙임> 1.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변경 개요
 2. 재산기준 변경에 따른 보장성 강화 사례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별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1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변경 개요

□ **추진 배경**

-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 등으로 現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 유지 시, 수급 탈락 우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과제인 「주거급여 4급지 체계를 고려한 지역분류체계 대안 마련」 추진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기초생활보장대상 단계적 확대를 위한 재산기준 현실화) → '22.10월 추진방안 보고(중앙생활보장위원회 총괄소위)

□ **주요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선정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4급지로 개편 및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조정
 - * 지역구분은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인천광역시는 3급지로 조정 ('20년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에서 3급지 방식보다 4급지 방식이 현실반영도가 높다는 결과)
 - ** 재산기준액 개편은 '18~'21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별 평균 전세가격 인상률 활용

< 현 행 >

(단위: 만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	의료	생계·주거·교육	의료	생계·주거·교육	의료
기본재산공제액	6,900	5,400	4,200	3,400	3,500	2,900
재산범위 특례액	10,000	8,500	7,300	6,500	6,600	6,000
주거용재산한도액	12,000	10,000	9,000	6,800	5,200	3,800



< 변 경 >

* 생계·의료·주거·교육 단가 동일 (단위: 만 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기본재산공제액	9,900	8,000	7,700	5,300
재산범위 특례액	14,300	12,500	12,000	9,100
주거용재산한도액	17,200	15,100	14,600	11,200

※ (참 고) 기본재산공제액 등 개념

기본재산공제액	재산가액 중 기본재산공제액 만큼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재산범위 특례액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 백만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 (1.04%) 적용,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붙임2

재산기준 변경에 따른 보장성 강화 사례

◆ **소득없이 주거용주택과 소액의 금융재산만을 보유한 A가구 사례**

- ▶ (가구구성) 2인 가구, 대도시(서울) 거주
- ▶ (소득·재산) 소득 없음 / 주거용 재산(1.7억 원) / 금융재산(158만 원)
- *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500만 원) 이내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지 않음

- 기존 재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62만 원이므로 선정기준 초과하여 수급 탈락하나,
- '23년부터 변경되는 재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환산액이 74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3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짐

< 재산기준 변경 전·후 A가구의 소득환산액 비교 >

현행 재산기준 적용

구분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범위 특례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1억원	1억2,000만원
중소	4,200만원	7,300만원	9,0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6,600만원	5,200만원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262만원)⁽¹⁾이 선정기준(104만원)⁽²⁾ 초과로 수급 탈락

* (1) a) A가구의 주거용재산 1.7억원 중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원 초과금액 0.5억원 × 일반 재산환산율 4.17% = 208.5만원

b) 남은 1.2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공제액 69백만원 차감 : 1.2억원 - 69백만원 = 51백만원

c) 51백만원 × 주거용재산환산율 1.04% = 53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b) = 261.5만원

(2) '23년 기준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2인 가구 중위소득 346만원 × 30% = 103.7만원

'23년 변경 재산기준 적용

구분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범위 특례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9,900만원	1억4,300만원	1억7,200만원
경기	8,000만원	1억2,500만원	1억5,100만원
광역시중충원	7,700만원	1억2,000만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9,100만원	1억1,200만원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74만원)⁽³⁾이 선정기준(104만원) 이내로 생계급여 책정 가능

* 월 30만원⁽⁴⁾ 정도의 생계급여 수령 가능

* (3) a) A가구의 주거용재산 1.7억원 중 주거용재산 한도액 1.72억원 초과금액 : 해당없음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대상 금액 없음)

b) 남은 1.7억원중 서울 기본재산공제액 99백만원 차감 : 1.7억원 - 99백만원 = 71백만원

c) 71백만원 × 주거용재산환산율 1.04% = 73.8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b) = 73.8만원

(4) '23년 기준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103.7만원에서 73.8만원 차감 : 103.7만원 - 73.8만원 = 29.8만원

- 이번 재산기준 개선으로 약 4.8만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기존 수급자도 급여액 일부 증가 효과)

붙임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 선정기준

- ◇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7%, 교육 50%)

$$\begin{aligned}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 (\text{재산} - \text{기본재산공제액} - \text{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 \\ &=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text{근로소득공제} \end{aligned}$$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 (기본재산공제액)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 ('22년) 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의료급여 대도시 54백만원, 중소도시 34백만원, 농어촌 29백만원

⇒ ('23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백만원, 경기 80백만원, 광역·세종·창원 77백만원, 그 외 지역 53백만원

※ [참고] '23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	'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22년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